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구리시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정은철)

# 목 차

결산검사 의견서 -----	1
I. 결산검사 경과 -----	2
1. 검사기간 -----	2
2. 결산검사 위원 -----	2
3. 결산검사 세부일정 -----	2
4. 결산검사 진행 -----	3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3
1. 구리시 재정의 개황 -----	3
1.1 재정여건 -----	3
2. 세입·세출 결산 -----	4
2.1 총괄 -----	4
2.2 일반회계 -----	6
2.2.1 세입 -----	6
2.2.2 세출 -----	8
2.3 특별회계(직영공기업 포함) -----	10
2.3.1 세입 -----	10
2.3.2 세출 -----	11
2.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12
3. 기금의 결산 -----	13
4. 재무제표의 결산 -----	14
5. 성과 보고서 -----	16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7
6.1 채권 -----	17
6.2 채무 -----	18
6.3 공유재산 -----	18
6.4 물품 -----	19
I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	20
I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65

2025회계연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구리시장 귀하

2026년 4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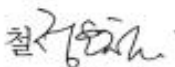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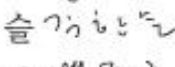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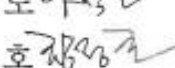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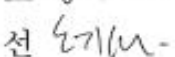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구리시 의회로부터 구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22일까지(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구리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구리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가지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구리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 내용을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정 은 철 
검사위원	김 한 슬 
검사위원	백 종 하 
검사위원	나 창 노 
검사위원	황 정 호 
검사위원	노 기 선 

# 1.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6. 4. 3. ~ 4. 22. (20일간)

##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정은철	◦ 결산총괄	
검사위원	김한슬	◦ 세입결산 전반 ◦ 채납관리 전반 ◦ 우수 결산사례 발굴	
검사위원	백종하	◦ 세출결산 전반 ◦ 결산첨부서류 전반 ◦ 기금(수입 및 지출)전반	
검사위원	나창노	◦ 세출결산 전반 ◦ 보조금 결산 전반 ◦ 공기업특별회계 전반	
검사위원	황정호	◦ 세입결산 전반 ◦ 보조금 사업 전반 ◦ 성과보고서 전반	
검사위원	노기선	◦ 재무결산 전반 ◦ 주요사업 추진현황 ◦ 공사 및 재단 결산 전반	

※ 분야별 교차검사

## 3. 결산검사 세부일정

일자별	결산검사내용
4.3. ~ 4.7.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4.8. ~ 4.13.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증빙자료 등 부합여부 검토
4.14. ~ 4.19.	사업별 세부검사 실시
4.20. ~ 4.21.	개선 및 권고사항 작성, 결산검사 위원 의견서 및 조서작성
4.22.	위원별 결산검사 조서 및 의견서 취합 정리 및 총괄의견서 작성 (대표위원)

#### 4. 결산검사 진행

-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 검사
-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 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1. 구리시 재정의 개황

#### 1.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평균 증가율
총계	세 입	1,057,760,050	954,106,342	913,146,580	955,104,740	998,718,107	-1.4
	세 출	829,790,969	759,072,972	748,374,411	806,299,410	869,190,462	1.2
	결산상 잉여금	227,969,081	195,033,370	164,772,169	148,805,330	129,527,645	-13.2
일반 회계	세 입	829,636,093	802,194,694	783,023,468	838,529,843	860,576,070	0.9
	세 출	663,763,013	652,961,334	651,693,909	720,063,604	765,862,306	3.6
	결산상 잉여금	165,873,080	149,233,360	131,329,559	118,466,239	94,713,764	-13.1
특별 회계	세 입	228,123,957	151,911,648	130,123,112	116,574,897	138,142,037	-11.8
	세 출	166,027,956	106,111,638	96,680,502	86,235,806	103,328,156	-11.1
	결산상 잉여금	62,096,001	45,800,010	33,442,610	30,339,091	34,813,881	-13.5

구리시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998,718,107천원으로 전년 대비 43,613,367천원(4.6%)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은 869,190,462천원으로 전년 대비 62,891,052천원(7.8%)이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129,527,645천원으로 전년 대비 19,277,685천원(13%)이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세입의 평균 증가율은 -1.4%이고, 세출의 평균 증가율은 1.2%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높으며,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증가율은 -13.2%이다.

구리시 회계연도말 인구수는 총 186,090명이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 는 현년도에 4,671천원이다.

구리시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고
자치단체 채무계 a(b+c+d)	-	-	-	-	-	
공채 b	-	-	-	-	-	
차입금 c	-	-	-	-	-	
채무부담행위 d	-	-	-	-	-	
지방공기업 채무 e	-	-	-	-	-	
채무총합계 f(a+e)	-	-	-	-	-	

구리시는 현재 채무액이 없다.

## 2. 세입 · 세출 결산

### 2.1 총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A-B)
<b>합 계</b>	<b>995,135,145</b>	<b>998,718,107</b>	<b>869,190,462</b>	<b>129,527,645</b>
일반회계	858,850,131	860,576,070	765,862,306	94,713,764
특별회계	136,285,014	138,142,037	103,328,156	34,813,881
(2개)공기업특별회계	96,886,402	98,997,441	71,950,012	27,047,429
(6개)기타 특별회계	39,398,612	39,144,596	31,378,144	7,766,452

회계별	결산상 잉여금(C) 세부내역					
	명시이월 <sup>㉑</sup>	사고이월 <sup>㉒</sup>	계속비이월 <sup>㉓</sup>	보조금실제 반납금 <sup>㉔</sup>	현년도 채무상환 <sup>㉕</sup>	순세계잉여금 (C)- <sup>㉑</sup> - <sup>㉒</sup> - <sup>㉓</sup> - <sup>㉔</sup> - <sup>㉕</sup>
<b>합 계</b>	<b>22,891,588</b>	<b>4,997,145</b>	<b>68,265,829</b>	<b>6,983,355</b>	<b>0</b>	<b>26,389,728</b>
일반회계	17,180,289	2,531,836	50,880,400	6,677,366	0	17,443,873
특별회계	5,711,299	2,465,309	17,385,429	305,989	0	8,945,855
(2개)공기업특별회계	1,000,000	2,396,937	14,935,236	163,092	0	8,552,165
(6개)기타특별회계	4,711,299	68,372	2,450,193	142,897	0	393,690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98,718,107천원으로 예산액 995,135,145천원보다 3,582,962천원이 증가하였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7%인 869,190,462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9,527,645천원이다.

이중 명시이월비 22,891,588천원, 사고이월비 4,997,145천원 및 계속비이월 68,265,829천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6,983,355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389,727천원이다.

## 2.2 일반회계

### 2.2.1. 세입

####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결산액	858,850,131	896,764,164	860,576,070	2,469,934	33,718,160

#### ○ 세입결산 개요

- 일반회계 수납액은 860,576,070천원으로 예산액의 100.4%로써 예산액보다 1,725,939천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5.9%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 정리보류액은 2,469,934천원으로써 이는 주로 무재산에 의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8%인 33,718,160천원으로 이는 주로 납세태만, 무재산에 의한 것이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860,576,070	860,576,070	-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예산현액-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수납액
2024	835,575,559	875,372,071	838,529,842	2,881,015	-39,796,512	36,842,229
2025	858,850,131	896,764,164	860,576,070	2,469,934	-37,914,033	36,188,094
증 감	23,274,572	21,392,093	22,046,228	-411,081	1,882,479	-654,135

수납액은 전년도 838,529,842천원 보다 22,046,228천원이 많은 860,576,070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리보류액은 전년도 2,881,015천원보다 411,081천원이 감소한 2,469,934천원이다.

###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계	858,850,131	896,764,164	860,576,070	2,469,934	33,718,160	
지방세	소 계	132,754,000	150,359,931	134,912,609	1,826,787	13,620,535
	주 민 세	3,700,000	3,969,687	3,816,127	10	153,550
	재 산 세	51,300,000	52,967,871	51,636,904	0	1,330,967
	자 동 차 세	21,054,000	22,966,324	21,774,509	0	1,191,815
	담 배 소 비 세	11,600,000	11,561,462	11,561,462	0	0
	지 방 소 비 세	8,700,000	8,861,430	8,861,430	0	0
	지 방 소 득 세	32,600,000	36,089,345	33,430,243	0	2,659,102
	지 난 년 도 수 입	3,800,000	13,943,812	3,831,934	1,826,777	8,285,101
세외 수입	소 계	56,422,336	78,295,645	57,554,875	643,147	20,097,623
	재 산 임 대 수 입	4,116,155	4,115,782	4,090,875	0	24,907
	사 용 료 수 입	8,753,650	8,732,788	8,685,664	0	47,124
	수 수 료 수 입	5,063,701	5,229,330	5,141,320	0	88,010
	사 업 수 입	8,781,500	8,865,347	8,864,730	0	617
	징수교부금수입	2,424,100	2,732,414	2,732,414	0	0
	이 자 수 입	3,117,330	3,286,619	3,279,940	0	6,679
	재 산 매 각 수 입	3,428,828	3,429,094	3,429,094	0	0
	부 담 금	3,304,929	3,258,629	3,258,629	0	0
	보조금반환수입	8,003,936	8,047,228	8,047,218	0	10
	기 타 수 입	5,432,292	6,923,783	5,691,162	0	1,232,621
	지 방 행 정 제 재 부 과 금	1,195,915	2,440,795	1,396,969	0	1,043,826
	지 난 연 도 수 입	2,800,000	21,233,836	2,936,860	643,147	17,653,829
지 방 교 부 세	87,030,000	86,929,191	86,929,191	0	0	
조 정 교 부 금	88,174,619	87,837,766	87,837,766	0	0	
보 조 금	313,381,215	312,192,644	312,192,644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1,087,961	181,148,987	181,148,985	0	2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15.7%인 134,912,609천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6.7%인 57,554,875천원을 징수하였다. 지방교부세는 10.1%인 86,929,191천원, 조정교부금은 10.2%인 87,837,766천원, 보조금은 36.3%인 312,192,644천원이 수납되었다.

## 2.2.2 세출

###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결산액	792,264,994	858,850,131	765,862,306	70,592,525	22,395,300

\* 집행잔액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포함

####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 792,264,994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66,585,137천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858,850,131천원이고, 지출액은 765,862,306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89.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0,592,525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8.2%이다.
-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감한 집행잔액은 22,395,300천원으로 5.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등에 기인한다.
- 예산전용은 275,040천원으로 노인복지관 계속 직영 운영에 따른 민간 위탁금 예산 변경 등으로 기인한 것이며
- 예비비사용액은 18,310천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족분 반영을 위한 것이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720,862,306	720,862,306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4회계연도 지출액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720,063,603	858,850,131	765,862,306	89.2	45,798,703	6.4
일반공공행정	44,061,244	54,698,269	46,556,316	85.1	2,495,072	5.7
공공질서 및 안전	23,993,557	9,143,778	8,077,519	88.3	-15,916,038	-66.3
교육	15,375,415	13,066,628	12,840,407	98.3	-2,535,008	-16.5
문화 및 관광	45,390,846	41,429,224	35,651,092	86.1	-9,739,754	-21.5
환경	39,026,992	45,637,005	40,318,803	88.3	1,291,811	3.3
사회 복지	299,887,473	382,508,133	368,814,885	96.4	68,927,412	23
보건	13,878,774	17,005,540	16,059,965	94.4	2,181,191	15.8
농림해양수산	5,482,761	6,150,110	5,630,787	91.6	148,026	2.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634,325	29,696,432	26,613,069	89.6	-3,021,256	-10.2
교통 및 물류	87,487,970	116,606,887	93,076,643	79.9	5,588,673	6.4
국토 및 지역 개발	31,782,179	52,524,046	25,145,328	47.9	-6,636,851	-20.9
예 비 비	0	699,415	0	0	0	0
기 타	84,062,067	89,684,664	87,077,492	97.1	3,015,425	3.6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액은 765,862,306천원으로 전년대비 45,798,703천원(6.4%)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368,814,885천원, 교통 및 물류 93,076,643천원, 기타 87,077,492천원 등이다.

전년 대비 지출이 증가한 분야는 사회복지(23%), 보건(15.8%), 교통 및 물류(6.4%) 등이며, 이는 기초연금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 광역철도운영 사업추진 등에 기인한다.

## 2.3 특별회계(직영공기업 포함)

### 2.3.1. 세입

####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136,285,013	144,360,351	138,142,036	6,190	6,212,123
공 기 업 특 별 회 계	96,886,401	99,602,556	98,997,440	4,742	600,373
수 도 사 업	21,638,225	23,396,210	23,161,518	2,427	232,264
하 수 도 사 업	75,248,176	76,206,346	75,835,922	2,315	368,109
기 타 특 별 회 계	39,398,612	44,757,795	39,144,596	1,448	5,611,750
교 통 사 업	16,002,125	21,168,233	15,555,034	1,448	5,611,750
의료급여기금운영	2,536,741	2,699,146	2,699,146	0	0
수 질 개 선	15,571,488	15,573,028	15,573,028	0	0
도시재정비촉진	4,650,872	4,676,924	4,676,924	0	0
폐기물처리시설	617,717	620,785	620,785	0	0
구리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9,669	19,679	19,679	0	0

####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38,142,036천원은 예산액의 101.3%로써 1,857,023천원이 추가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5.7%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0.6% 증가하였다.
- 정리보류액은 6,190천원으로써 이는 소멸시효완성 등 사유로 인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3%인 6,212,123천원으로써 주로 납세태만에 기인한 것이다.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1,168,233천원 중 15,555,034천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73.5%로, 담당부서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38,142,037	138,142,037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되었다.

### 2.3.2 세출

####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b>합계</b>	<b>118,294,331</b>	<b>136,285,014</b>	<b>103,328,156</b>	<b>25,562,037</b>	<b>7,394,821</b>
<b>공기업 특별회계</b>	<b>84,992,074</b>	<b>96,886,402</b>	<b>71,950,012</b>	<b>18,332,172</b>	<b>6,604,218</b>
수도사업	20,326,600	21,638,225	17,819,842	1,014,303	2,804,080
하수도사업	64,665,474	75,248,177	54,130,170	17,317,869	3,800,138
<b>기타 특별회계</b>	<b>33,302,257</b>	<b>39,398,612</b>	<b>31,378,144</b>	<b>7,229,865</b>	<b>790,603</b>
교통사업특별회계	13,322,673	16,002,126	10,438,907	5,115,694	447,525
의료급여기금운영	2,536,741	2,536,741	2,446,679	0	90,062
수질개선	15,571,488	15,571,488	15,334,474	0	237,014
도시재정비촉진	1,233,969	4,650,871	2,524,391	2,114,171	12,309
폐기물처리시설	617,717	617,717	614,777	0	2,940
구리시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19,669	19,669	18,916	0	753

\* 집행잔액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포함

####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 118,294,33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7,990,683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6,285,014천원이고, 지출액은 103,328,156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75.8%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5,562,037천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18.7%이다.
-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감한 집행잔액은 7,394,821천원으로 5.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03,328,155	103,328,155	-

각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되었다.

### 2.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 계속비이월 · 명시이월 · 사고이월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합 계	17건	68,265,829	35건	22,891,588	94건	5,361,447	
일 반 회 계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1건	50,880,400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 등 31건	17,180,289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전산 개발비 등 64건	2,531,837	
특 별 회 계	6건	17,385,429	4건	5,711,299	25건	2,465,308	
공 기 업	수 도 사 업	-	-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등 10건	1,014,303	
	하수도 사 업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5건	14,935,236	제2하수처리시설 1차침전지 구조물 안전성 확보사업	1,000,000	제2하수처리시설 베어링교체공사 등 11건	1,382,633
기 타	교 통 사 업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336,022	갈매2저류지 복개주차장 건립 등 3건	4,711,299	갈매2저류지 복개주차장 건립 등 4건	68,372
	도 시 재 정비 축 진		2,114,171	-	-	-	-
기 금 (재난관리기금)	-	-	-	-	내동2천 소화천 긴급정비공사 등 5건	364,302	

검사결과 계속비는 17건 68,285,829천원, 명시이월은 35건 22,891,588천원이며, 사고이월은 94건 5,361,447천원이 발생하였다.

### 3. 기금의 결산

본 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기금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 = ㉑ + ㉓
		계 ㉔ = ㉑ - ㉒	조성액 ㉑	사용액 ㉒	
<b>합 계</b>	<b>112,869,504</b>	<b>-43,976,164</b>	<b>24,500,111</b>	<b>68,476,275</b>	<b>68,893,340</b>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3,868,999	-41,174,350	22,460,050	63,634,400	52,694,64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514,790	-3,750,477	99,523	3,850,000	1,764,313
고 향 사 랑 기 금	102,457	73,303	78,482	5,179	175,760
재 난 관 리 기 금	5,698,620	754,747	1,330,958	576,211	6,453,367
옥외광고발전기금	1,139,067	143,693	252,431	108,738	1,282,760
식 품 진 흥 기 금	359,262	-61,777	48,833	110,610	297,485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 원 기 금	2,119,783	36,881	86,881	50,000	2,156,664
자 활 기 금	829,699	-26,953	33,047	60,000	802,746
노 인 복 지 기 금	2,039,095	24,572	63,572	39,000	2,063,667
장 애 인 복 지 기 금	1,123,464	26,173	46,173	20,000	1,149,63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4,268	-21,976	161	22,137	52,292

2025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112,869,504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4,500,111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68,476,275천원을 공제한 68,893,340천원이다.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33,894,309	162,555,044	202,074,012	197,854,247	112,869,504	35.1
당해연도 조성액	136,708,747	73,702,583	33,863,693	115,316,669	24,500,111	-35
당해연도 사용액	8,048,012	34,183,615	38,083,458	200,301,411	68,476,275	70.8
<b>당해연도말 조성액</b>	<b>162,555,044</b>	<b>202,074,012</b>	<b>197,854,247</b>	<b>112,869,504</b>	<b>68,893,340</b>	<b>-19.4</b>

검사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등 10개 기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8,893,340천원이며, 전년 대비 43,976,164천원(61%)이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당해연도 조성액의 평균 증가율은 -35%, 당해연도 사용액의 평균 증가율은 70.8%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의 증가율은 -19.4%이다.

### 4. 재무제표의 결산

2025회계연도 구리시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	2025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b>자 산</b>	<b>3,860,991,717</b>	<b>3,824,537,993</b>	<b>-36,453,724</b>	<b>-0.9%</b>
Ⅰ. 유 동 자 산	303,042,019	239,307,798	-63,734,221	-21.0%
Ⅱ. 투 자 자 산	284,904,362	281,546,261	-3,358,101	-1.2%
Ⅲ. 일반유형자산	345,953,631	362,187,979	16,234,348	4.7%
Ⅳ. 주민편의시설	817,439,957	820,631,706	3,191,749	0.4%
Ⅴ. 사회기반시설	2,101,190,637	2,115,289,684	14,099,047	0.7%
Ⅵ. 기타비유동자산	8,461,111	5,574,565	-2,886,546	-34.1%
<b>부 채</b>	<b>76,693,109</b>	<b>76,195,470</b>	<b>-497,639</b>	<b>-0.6%</b>
Ⅰ. 유 동 부 채	16,152,928	12,146,302	-4,006,626	-24.8%
Ⅱ. 장기차입부채	-	-	0	0.0%
Ⅲ. 기타비유동부채	60,540,181	64,049,168	3,508,987	5.8%
<b>순자산</b>	<b>3,784,298,608</b>	<b>3,748,342,523</b>	<b>-35,956,085</b>	<b>-1.0%</b>
Ⅰ. 고 정 순 자 산	3,216,553,968	3,247,109,149	30,555,181	0.9%
Ⅱ. 특 정 순 자 산	51,921,493	51,960,676	39,183	0.1%
Ⅲ. 일 반 순 자 산	515,823,147	449,272,698	-66,550,449	-12.9%

2025회계연도말 구리시의 자산은 3,824,537,993천원으로 전년도의 3,860,991,717천원보다 36,453,724천원(0.9%)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재정자금의 감소 등으로 유동자산이 전년대비 63,734,221천원(21.0%)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2025회계연도말 구리시의 부채는 76,195,470천원으로 전년도의 76,693,109천원 보다 497,639천원(0.6%)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세입 세출외현금(단기)의 감소 등으로 유동부채가 전년대비 4,006,626천원(24.8%)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	2025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299,758,370	307,443,300	7,684,930	2.56%
II. 관리운영비	94,522,072	97,316,259	2,794,187	2.96%
III. 비배분비용	35,654,699	25,014,626	-10,640,073	-29.84%
IV. 비배분수익	38,509,414	41,622,079	3,112,665	8.08%
V. 재정운영순원가 ( I + II + III - IV )	391,425,728	388,152,106	-3,273,622	-0.84%
VI. 일반수익	333,947,731	349,409,403	15,461,672	4.63%
VII. 재정운영결과 ( V - VI )	57,477,996	38,742,702	-18,735,294	-32.60%

2025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667,459,030천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60,015,730천원을 차감한 307,443,300천원이며, 순원가가 많은 상위 사업은 사회복지분야(99,203,574천원)와 교통 및 물류(59,081,472천원)이다.

본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4,674,104천원과 경비 2,562,429천원, 내부거래를 제거한 민간등이전비용 79,72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비배분비용은 25,014,626천원으로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41,622,079천원으로 자체 조달수익과 기타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구리시의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뺀 금액으로 38,742,702천원이며 전년도 57,477,996천원 보다 18,735,294천원(-32.6%)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등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5. 성과보고서

구리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5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구리시는 본 회계연도의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와 ‘성과보고서’ 에 ‘비전⇨ 전략목표(12개) ⇨ 정책사업목표(84개)⇨ 단위사업(201개)’ 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0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구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달성수(B)	미달성수	달성률(B/A)
계	12	84	201	192	9	96%
기획예산담당관	1	5	6	6	0	100%
감사담당관	1	1	4	4	0	100%
홍보협력담당관	1	1	2	2	0	100%
행정지원국	1	7	20	20	0	100%
안전도시국	1	8	17	17	0	100%
도시개발교통국	1	11	23	22	1	96%
경제재정국	1	15	40	39	1	98%
복지문화국	1	20	49	45	4	92%
보건소	1	4	11	11	0	100%
환경관리사업소	1	10	21	19	2	90%
시립도서관	1	1	3	3	0	100%
의회사무과	1	1	5	4	1	80%

구리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홍보협력담당관·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안전도시국·보건소·시립도서관은 성과지표를 100%를 달성하였고, 도시개발교통국·경제재정국·복지문화국·환경관리사업소는 90% 이상, 의회사무과는 80% 이상을 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6.1 채권

####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4,061,329	330,399	254,787	4,136,941
일반회계	3,956,510	250,224	224,787	3,981,947
기타특별회계	61,511	0	0	61,511
기금	43,308	80,175	30,000	93,483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36,941천원으로 확인되었다.

## 6.2 채무

###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현재액
합 계	-	-	-	-	-
일반회계	-	-	-	-	-

검사결과 구리시는 현재 채무액이 없다.

## 6.3 공유재산

본 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3,494,290,695	91,548,325	8,927,940	3,576,911,080	
행정 재산	소 계	3,135,505,400	46,569,558	5,913,186	3,176,161,772
	공 용 재 산	726,874,453	33,778,918	2,662,149	757,991,222
	공공용재산	2,141,888,019	12,790,640	3,251,037	2,151,427,622
	기업용재산	266,117,672	0	0	266,117,672
	보존용재산	625,256	0	0	625,256
일 반 재 산	188,660,739	888,839	3,014,754	186,534,824	
건설 중인 재산	170,124,556	44,089,928	0	214,214,484	

2025회계연도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대비 82,620,385천원이 증가한 3,576,911,080천원이다.

주요 증가내역은 안말지구 도로 편입토지 매입,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물 준공, 기계기구 매입에 따른 재산 증가 등이다.

## 6.4 물품

본 연도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물품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1,853	57	12	1,898
금 액	16,068,628	418,840	130,835	16,356,633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288,005천원이 증가한 16,356,633천원으로 확인되었다. 증가사유는 냉난방기 구입과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에 의한 것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노후 차량 매각처분에 의한 것이다.

### I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목록

연번	검 사 의 견	소관부서	비고
1	사업예산 편성의 부적정	기획예산담당관	지적 사항
2	이월예산의 적정 운영	기획예산담당관, 전부서	
3	명시·사고이월 혼용에 따른 집행 관리 부실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4	명시이월 사업 집행 관리 철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균형개발과, 평생학습과, 공원녹지과	
5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이월예산 관리 소홀	균형개발과	
6	기금 운영의 효율적 개선 방안 검토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장애인복지과	
7	성과목표의 적정한 설정과 정확한 실적 작성	기획예산담당관, 전부서	
8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적용 권고	총무과	
9	세입징수포상금 규정 확대 적용 검토	징수과	
10	국유재산(시도유재산) 대부료 미수납액 관리 철저	도로과	
11	수도사업특별회계 미지급금 관리 철저	수도과	
12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	수도과	
13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관리 철저	수도과, 하수과	
14	구리랜드마크타워 및 구리아이타워 사업 관련 지출비용 누적에 따른 권고	구리도시공사	
15	입주자관리수익 및 입주자관리비용 재무제표 기재	구리농수산물공사	

연번	검 사 의 견	소관부서	비고
16	기타 투자자산(콘도회원권) 사용 방안 강구	구리농수산물공사	
17	예산의 적정한 편성 및 관리 철저	구리문화재단, 구리청소년재단 구리상권활성화재단	
18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	전부서	
19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	세정과	우수 사례
2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카카오 알림톡 바로납부 서비스 시행	징수과	
21	세입세출외현금 자금운용 방식 개선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	회계과	

## 사업예산 편성의 부적정 (기획예산담당관)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을 예산에 편입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위함입니다.
- 구리시는 연간 34,652백만원이 소요되는 8호선연장 역무위탁사업과 8호선연장 본선 위탁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함에 있어 본예산에 역무위탁사업비 2,346백만원, 본선 위탁사업비 7,58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시 역무위탁사업비 4,800백만원, 본선 위탁사업비 19,92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결산서 등 관련 검토자료에 의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전체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일부 예산만 편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인정하더라도 당초 사업 계획상 연간 소요액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일부만 본예산에 반영, 나머지를 추경에 분할 편성하는 것은 예산 총계주의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볼 것입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하철 운행 같은 계속적 사업 등은 연간 총소요액을 우선 추계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고 본회의 심의 시 재원 조달계획 및 향후 추경계획 등 사전 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또한,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을 전제로 한 분할 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 편성의 완전성 및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이월예산의 적정 운영

## (기획예산담당관, 전 부서)

### □ 현황 및 문제점

#### ○ 2025년 이월예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2024년 (2023년에서 이월)		2025년 (2024년에서 이월)		증감액 (B-A)	증감률 (B-A/A)
	사업수	이월액(A)	사업수	이월액(B)		
합계	114	84,575,819,800	144	96,154,562,370	11,578,699,840	13.69%
명시	35	8,506,346,820	34	22,891,588,170	14,385,241,350	169.11%
사고	61	7,803,686,600	94	4,997,145,090	-2,806,541,510	-35.96%
계속비	18	68,265,786,380	16	68,265,829,110	42,730	0.00%
이월액비중	10.14%		10.56%			
최종예산 현액	951,139,993,890		995,135,144,800			

- 2025년 구리시의 전체적인 이월 규모는 사업 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024년 약 84,575백만원에서 2025년 약 96,154백만원으로 11,578백만원(13.69%) 증가하였으며, 최종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10.14%에서 10.56%로 0.42% 상승하였습니다.
- 명시이월은 예측 가능한 사유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으로 명시이월액이 전년 대비 169.11%(약 143.8억 원) 급증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사전 행정절차(보상, 설계, 협의 등)를 소홀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 사고이월의 경우는 금액은 줄었으나, 사업 수가 61건에서 94건으로 54% 증가 하였습니다. 규정상 사고이월은 재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인데, 건수가 증가한 것은 연내 집행 마무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예산규모가 커진 것보다 이월액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여 이월 비중이 10.56%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 부서에서는 명시이월 사유가 불가피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이월을 진행하여야 하며, 사고이월은 소규모 사업들이 연말에 집중되어 관행적 이월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이월 역시 사업 중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실제 소요 대비 과다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계속비 이월이 전체 이월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월액 비중 축소를 위한 '이월예산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관리하여 주시고,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 관리 및 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시·사고이월 혼용에 따른 집행 관리 부실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 □ 현황 및 문제점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동시 발생사업]

(단위 : 원)

부서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이월사유
회계과	인창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시설비	87,842,200	11,494,000	20,240,000	(명시)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 토지보상 절차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25.12.31.) (사고)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 '25.6.27. 준공 예정
도로과	교량 및 도로구조물 정비(유지관리)	시설비	2,590,000,000	1,200,000,000	130,845,330	(명시) 아천교 보수보강 공사 : 동절기 공사 중지('25.5.15.) (사고) 왕숙길빛교 보수보강 공사 : 동절기 공사 중지('25.5.30.)
도로과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 사업	시설비	1,374,970,000	400,000,000	859,885,150	(명시) '24.12.27.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사고) 전기공사 등 : '25.6.30. 준공 예정
공원 녹지과	이문안호수공원 공원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205,393,300	20,133,000	39,650,000	(명시) 신속한 사유지 토지보상 (25.12.31.) (사고) 설계용역 등 : BF인증 최종심의 지연 (25.7.31. 준공 예정)

- 구리시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이월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일 사업 내에서 일부 예산은 명시이월로, 일부는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등 이월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 수립 단계에서의 사업계획이 정확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특히, 사고이월은 예측 불가능한 사유에 한정해야 함에도 만성적인 준공 지연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 대규모 시설비 사업(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문안호수공원 등)은 완성에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계속비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 회계연도마다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의 계획성과 엄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 특별교부세 등 연도 말 교부 결정에 따른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토지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BF인증, 재해영향평가 등)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사전 대비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완성에 3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토지보상, 감정평가, 각종 인증 및 평가 등 사전 절차를 본 공사 발주 전 조속히 완료하여 연도 내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업부서 및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기연장 사유를 엄격히 심사하여 불필요한 예산 사장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명시이월사업 집행 관리 철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균형개발과, 평생학습과, 공원녹지과)

### □ 현황 및 문제점

[2024~2025년 명시이월 연속 발생사업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2024		2025	
			이월액	사유	이월액	사유
회계과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11,494,000	토지보상 절차이행 기간 소요	2,000,000,000	감정평가 진행중으로 보상협의기간 소요
균형개발과	갈매2저류지 복개주차장 건립	시설비 감리비	940,041,000	집행시기 미도래	3,685,052,000	주차장 공사기간 소요
평생학습과	구리시 전용축구장 2면 조성	시설비	1,020,000,000	실시설계 및 GB관리계획 변경영역 사업기간 미도래	3,126,537,920	행정절차 (GB계획변경)등 기간소요에 따른 착공지연
공원녹지과	이문안호수공원 공원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20,133,000	연초 신속한 토지보상을 위한 추경반영 후 이월	1,482,596,900	공사기간 소요

-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2024년(11백만원)에 이어 2025년(2,000백만원)으로 이월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토지보상 절차 지연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거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갈매2저류지 복개주차장 건립 사업의 경우 집행 시기 미도래 및 공기소요를 사유로 36억원 이상의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임에도 계속비로 관리하지 않고 매년 이월 처리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구리시 전용축구장 조성 사업의 경우 GB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기 예산 편성으로 시급한 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묶여있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이문안호수공원 시설확충사업의 경우 2024년 추경 편성 이후 이월, 이어 2025년에도 14억원 규모의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기간 부족을 이월 사유로 든 것은 설계 및 발주 단계의 일정 관리가 부실했음을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르면 수년이 걸리는 대규모 건설 사업은 당초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명시이월로 사업을 연장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계속비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GB관리계획 변경이나 토지보상은 변수가 많아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 전액을 편성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단계별(설계비→보상비→공사비)로 예산을 분리 편성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 연속 이월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갈매2저류지 복개주차장이나 전용 축구장 조성과 같은 대형 사업은 공정 관리 전문가(PM)를 통한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하며, 이월이 반복되는 예산 총괄부서에는 향후 예산 편성 시 페널티 부여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이월 예산 관리 소홀 (균형개발과)

## □ 현황 및 문제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단위 : 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 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21	300,000,000	-	300,000,000	208,087,940	91,912,060	-
2022	4,476,000,000	91,912,060	4,567,912,060	5,500,000	4,562,412,060	-
2023	15,895,000	4,562,412,060	4,578,307,060	24,384,490	4,538,027,570	15,895,000
2024	-	4,538,027,570	4,538,027,570	1,121,124,940	3,416,902,630	-
2025	1,220,000,000	3,416,902,630	4,636,902,630	2,522,731,340	2,114,171,290	-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 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 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22	4,000,000,000	-	4,000,000,000	-	4,000,000,000	-
2023	1,000,000,000	4,000,000,000	5,000,000,000	16,794,200	3,983,205,800	1,000,000,000
2024	-	3,983,205,800	3,983,205,800	2,243,794,230	1,739,411,570	-
2025	2,124,000,000	1,739,411,570	3,863,411,570	3,347,389,470	336,022,100	180,000,000

○ 계속비 이월사업은 예산의 집행상황과 이월예상액을 고려하여 연간 부담액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2023년 확보된 예산(도시재정비 특별회계 15,895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000,000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더욱이 2023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만 사업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예산액은 반드시 당해 확보하지 않았어도 될 예산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연차별 집행계획 및 이월관리에 소홀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계속비 사업에 대해 연차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이월 여부를 적정하게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 기금 운영의 효율적 개선 방안 검토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장애인복지과)

## □ 현황 및 문제점

### [구리시 기금 현황]

(2025년 12월 현재)

구 분	자체기금(3)	법정재량기금(2)	법정의무기금(5)
기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단체등 지원기금</li> <li>- 노인복지기금</li> <li>- 장애인복지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재정안정화기금</li> <li>-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향사랑기금</li> <li>- 재난관리기금</li> <li>- 옥외광고발전기금</li> <li>- 식품진흥기금</li> <li>- 자활기금</li> </ul>

### [2025년 자체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원)

기금명	수입				지출		
	계	이자	예치금회수	기타 수입	계	사업비	예치금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	2,206,664,388	86,880,910	2,119,783,478	-	2,206,664,388	50,000,000	2,156,664,388
노인복지기금	2,102,666,858	63,416,290	2,039,095,015	155,553	2,102,666,858	39,000,000	2,063,666,858
장애인복지기금	1,169,637,362	46,173,291	1,123,464,071	-	1,169,637,362	20,000,000	1,149,637,362

- 구리시 기금관련 조례에 따라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된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3개 기금은 원금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매년 많은 예치금은 유지한 채 이자 수입으로만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이자수입의 일부만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업비 편성비율을 보면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 2.26%, 노인복지기금이 1.9% 장애인복지기금이 1.71%로 이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사업비 편성비율이 낮은 지자체로 선정되는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현재 일반회계에서도 해당 기금들과 유사한 사업으로 매년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는 만큼 「지방기금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별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금은 해당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을 권고합니다.

# 성과목표의 적절한 설정과 정확한 실적 작성

(기획예산담당관, 전 부서)

## □ 현황 및 문제점

-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바 성과계획서상의 지표와 성과보고서의 지표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적 및 목표치에 오류가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 일부 지표의 경우 매년 실적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정된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목표 달성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의 지표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충분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측정방법)이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산식이 “사업예산 집행액 / 예산확보액”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바, 이는 단순히 작성의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맞추어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구리시 홈페이지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되고 있는 자료로써 1년간의 부서별 업무 실적을 한눈에 비교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 성과계획서에 설정된 목표를 기준으로 달성률이 산정되는 만큼, 목표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 지표가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대표성을 내포한 측정산식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 적용 권고

## (총무과)

### □ 현황 및 문제점

#### ○ 2025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관부서	위탁사무		예산 (국·도·시비·자부담)
		위탁사무명	건수	
1	가족복지과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0	6,996,462
2	위생안전과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1	657,000
3	복지정책과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운영 등	5	4,487,443
4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상담센터 운영 등	19	14,288,005
5	평생학습과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등	4	2,163,465
6	일자리경제과	구리시 일자리센터 운영	3	1,703,436
7	자원순환과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등	2	16,631,105
8	총무과	구리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1	410,827
9	환경과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등	2	54,660
10	공원녹지과	갈매천공원 풋살장 운영	1	60,918
11	도로과	현수막 지정계시대 위탁관리 운영	4	500,237
12	지역보건과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2	2,206,964
<b>합 계</b>			<b>54</b>	<b>50,160,522</b>

#### ○ 민간위탁사업별 결산서 검증 현황

연번	위탁사무명	결산 검증				
		계	회계법인	내부 공무원	기타	미 실시
1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10	1			9
2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1	1			
3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운영 등	5	1	2	1	1

4	노인상담센터 운영 등	19	4	10		5
5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등	4	1			3
6	구리시 일자리센터 운영	3		2		1
7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등	2	1	1		
8	구리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1				1
9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등	2				2
10	갈매천공원 풋살장 운영	1	1			
11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운영	4				4
12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2	2			
<b>합계</b>		<b>54</b>	<b>12</b>	<b>15</b>	<b>1</b>	<b>26</b>

- 구리시에서는 2025년 현재 총 54개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5조 1항에 의하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54개의 민간위탁 사업 중 절반가량은 회계감사를 통한 결산서 검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간 500억 이상의 시예산이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집행되고 있음에도, 사업부서 담당자의 예산·회계 점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미실시한 사례가 있는 실정으로,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 기관의 회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등을 확인해 보면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외부 회계전문가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리시도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외부 회계전문가의 회계감사 실시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민간위탁사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및 회계 부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세입징수포상금 규정 확대 적용 검토 (징수과)

### □ 현황 및 문제점

#### ○ 구리시 세입금 미수납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현년도 미수금	지난년도 미수금
<b>합</b>	<b>계</b>	<b>33,718</b>	<b>7,779</b>	<b>25,938</b>
지	방 세 수 입	13,620	5,335	8,285
세	외 수 입	20,098	2,444	17,653

#### ○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액 (A)	정리액(B)			징수율 (c/A)	정리율 (B/A)	미수액
			계	징수액(c)	정리보류			
합	계	16,191	6,956	4,292	2,027	30.4	43.0	9,235
시	세	<b>13,944</b>	<b>5,659</b>	<b>3,832</b>	<b>1,827</b>	<b>27.5</b>	<b>40.6</b>	<b>8,285</b>
도	세	2,247	1,297	1,097	200	48.8	57.7	950

#### ○ 지방세 최근 3개년 징수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합	계	2,897	20.9	4,813	28.3	4,929	30.4
시	세	<b>2,676</b>	<b>21.0</b>	<b>3,608</b>	<b>24.8</b>	<b>3,832</b>	<b>27.5</b>
도	세	221	19.4	1,205	49.4	1,097	48.8

○ 최근 경기불황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방세분야의 징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됩니다.

- 다만, 시 전체적으로 체납 규모가 33,718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저하되고 가용재원이 감소하여 각종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구리시는 세입증대 유공자에게 「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세입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는 전문추심원(임기제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체납징수 업무는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높은 분야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전부서 세입 부과·징수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국유재산(시도유재산) 대부료 미수납액 관리 철저 (도로과)

##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국유재산 및 시도유재산 대부료 중 2026년 4월 현재(결산검사기간) 미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합 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이전
<b>합 계</b>		<b>38,636,660</b>	<b>9,120,850</b>	<b>6,653,900</b>	<b>6,550,650</b>	<b>16,311,260</b>
임○실	소 계	3,265,720	1,120,210	1,072,300	1,073,210	-
	본 세	3,242,300	1,102,100	1,072,300	1,067,900	-
	가 산 금	23,420	18,110	-	5,310	-
황○규	소 계	852,300	852,300	-	-	-
	본 세	852,300	852,300	-	-	-
	가 산 금	-	-	-	-	-
권○자	소 계	33,318,240	5,947,940	5,581,600	5,477,440	16,311,260
	본 세	31,333,980	5,860,600	5,581,600	5,062,800	14,828,980
	가 산 금	1,984,260	87,340	-	414,640	1,482,280
김○용	소 계	1,200,400	1,200,400	-	-	-
	본 세	1,200,400	1,200,400	-	-	-
	가 산 금	-	-	-	-	-

※ 2026년1월~4월 징수금액은 결산서에 미반영

- 부과금이 미납될 시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납부독려 등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결산검사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미수납금은 38,636천원에 달합니다.

- 체납액 징수업무는 도로과에서 현년도분을 담당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 전담부서인 징수과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부과부서의 역할이 현년도 징수에만 집중되어 있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징수과로 이관되므로 체납액 징수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과부서와 징수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도로과에서는 미납된 대부료를 징수할 때 현년도분만이 아니라 당해 납부자의 미수금 전액이 회수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과년도 미수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수도사업특별회계 미지급금 관리 철저 (수도과)

### □ 현황 및 문제점

#### ○ 미지급금 명세서

(단위 : 원)

계정과목	발생일자	금 액	거래처	미지급사유
<b>미지급금 합계</b>		<b>791,380</b>		
신설공사비	2008년 이전	182,970	이○표	채무자미회수
신설공사비	2008년 이전	83,200	재건축조합	채무자미회수
신설공사비	2008년 이전	195,600	박○임	채무자미회수
신설공사비	2008년 이전	18,480	안○순	채무자미회수
신설공사비	2008년 이전	311,130	재건축조합	채무자미회수

※ 신설공사비 수의계약시 낙찰차액에 의한 정산금액 발생

-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상수도 급수공사 시 선납한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2008년 이전 이○표 외 4인에 대하여 신설급수공사비 정산금 791,380원을 실제공사비보다 초과 부과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정산 처리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제47조(소멸시효)에 의거 ‘수도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2008년 이전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 미지급금(이○표 외 4인)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고시송달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 세입으로 귀속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 (수도과)

## □ 현황 및 문제점

### ○ 경기도 타시군 상수도요금(가정용) 현황

(기준 : 2025년도말)

연번	시군명	요금 (㎡당 원)	현실화율(%) (2024년대비)	연번	시군명	요금 (㎡당 원)	현실화율(%) (2024년대비)
1	수 원 시	558		17	양 주 시	742.0	68
2	용 인 시	487	78	18	광 명 시	465.0	106
3	고 양 시	684		19	군 포 시	849.5	
4	화 성 시	712	84	20	오 산 시	586.0	85
5	성 남 시	465		21	이 천 시	887.0	
6	부 천 시	538		22	안 성 시	870.5	
7	남 양 주 시	673		23	구 리 시	480.0	62
8	안 산 시	496	80	24	포 천 시	929.6	
9	평 택 시	867		25	의 왕 시	721.1	
10	안 양 시	547	99	26	양 평 군	897.0	56
11	시 흥 시	584	94	27	여 주 시	879.0	
12	파 주 시	616		28	동 두 천 시	719.5	62
13	김 포 시	654	72	29	과 천 시	442.0	
14	의 정 부 시	766		30	가 평 군	868.0	
15	광 주 시	668		31	연 천 군	553.0	
16	하 남 시	319					

※ 출처: 행정안전부-지방물가공개-지방공공요금

요금산출(톤당): 공개자료(기본료+가정용20톤)-660원(구리시 13mm기본료)/20톤

### ○ 구리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년도	급수전수	급수수익 (백만원)	조정량(톤)	톤당요금(원)	총괄원가 (백만원)	톤당원가(원)	요금 현실화율(%)	비고
'22	19,828	12,014	18,371,091	653.98	19,265	1,048.67	62.36	
'23	19,697	11,562	18,216,503	634.71	19,505	1,070.76	59.28	
'24	19,565	12,170	18,353,058	663.10	20,182	1,099.66	60.30	
'25	19,563	12,060	18,248,244	660.90	19,340	1,059.90	62.36	

※ 요금현실화율(%) = 톤당요금 / 톤당원가 \*100

※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근거로 작성함

-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요금(가정용)현황을 확인해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구리시보다 수도 요금이 낮은 시군은 4개시군(성남, 광명, 하남, 과천)이며, 인근 남양주시(1톤당 673원)의 경우 구리시(1톤당 480원)보다 1톤당 193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2024년 기준)를 살펴보면 확인된 12개 시군 중에 양평군(56%)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구리시보다 현실화율이 높으며, 특히, 광명시의 경우 현실화율이 106%에 달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구리시 상수도요금은 2004년도에 산출된 요금으로써 톤당 생산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지방 직영기업의 재정건정성 확보, 안정적인 상수도 시설 운영 및 투자재원 확보에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지방직영기업의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2025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액의 64%가 상수도요금인 만큼 수도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 또한 상수도요금의 적정 수준 현실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후화된 상수도 관로를 체계적으로 교체 및 정비한다면 시민에게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급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서에서는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 하시기 바라며, 원가 절감 및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관리 철저 (수도과, 하수과)

### □ 현황 및 문제점

#### ○ 상·하수도 연도별 요금 체납 현황

(단위 : 원)

연도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지하수
2020년	4,126,910	5,034,640	804,670	15,634,000
2021년	1,147,440	940,880	226,540	
2022년	2,014,800	2,266,800	284,910	1,855,000
2023년	1,828,940	1,169,570	285,320	
2024년	12,269,310	17,321,650	1,987,080	15,155,000
2025년	188,092,540	277,935,810	39,118,120	
계	209,479,940	304,669,350	42,706,640	32,644,000

#### ○ 상·하수도 고액체납자 현황(3회 이상, 100만원 이상)

(기준 : 2026. 3월)

연번	수용기번호	체납액(원)	체납건수	연번	수용기번호	체납액(원)	체납건수
1	03-055-7307-7000	1,042,710	32	16	02-226-0126-7000	2,771,460	5
2	07-120-0045-0100	1,054,280	14	17	02-226-0068-0300	3,117,970	9
3	04-061-1950-0000	1,065,370	33	18	08-211-0500-0000	3,209,220	3
4	03-104-0082-0000	1,491,540	30	19	02-226-0130-0000	3,370,050	6
5	04-120-0900-0109	1,495,730	29	20	04-352-2550-0000	4,068,670	9
6	06-560-1300-0000	1,533,960	7	21	04-085-0130-0000	4,471,440	7
7	04-170-5400-0300	1,582,380	19	22	08-111-0030-0003	5,469,520	3
8	08-221-0088-0000	1,794,100	6	23	08-221-0006-0000	5,497,480	5
9	04-120-0900-0102	1,903,680	18	24	08-201-2700-0000	6,159,720	8
10	05-700-1600-0000	2,178,090	12	25	02-226-0099-1000	9,960,690	11
11	07-120-0052-0000	2,226,900	7	26	06-532-1600-0000	13,032,060	4
12	07-020-2100-0000	2,348,550	5	27	07-110-0200-0000	27,893,380	5
13	06-692-0051-0000	2,449,340	26	28	01-300-5520-2000	70,053,740	11
14	01-200-5312-0010	2,452,610	6	29	01-300-5520-1000	85,564,740	10
15	08-800-2500-0000	2,694,280	3				

○ 지하수 사용 체납자 현황

납부자	체납연도	체납액	체납정리
윤○○	2019년, 2020년	15,634천원	2019년~2022년 납부독촉 안내 후 2022년 부동산 압류
케이○○○○○	2023년, 2024년	1,855천원	납부독촉 안내문 발송 및 재산조회 후 압류 예정
마실○○○○○	2025년	15,155천원	

○ 상·하수도 사용료는 「구리시 수도급수조례」, 「구리시 하수도사용조례」,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가정의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상·하수도 사용 요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체납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6년간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상수도 요금 209백만원, 하수도요금 304백만원, 물이용부담금 42백만원, 지하수 사용 요금 32백만원 총 1,231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최근 2년간(2024~2025년)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9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대외적인 경제불안 요소의 증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인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건수의 증가는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낮은 현실에서 해당 특별회계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상·하수도 사용료는 수도과에서 징수업무를 하고 있으나,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체납 관리는 하수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과에서는 체납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고액 장기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유형에 따른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징수 방안 마련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랜드마크타워 및 구리아이타워 사업 관련 지출비용 누적에 따른 권고 (구리도시공사)

## □ 현황 및 문제점

### ○ 주요 사업내용

구분	구리랜드마크타워	구리아이타워
사업위치	구리시 인창동 673-1	수택동 882
토지면적	9,677.7㎡	11,000㎡
사업기간	미정	2019년 ~ 2027년
사업규모	미정	지하4층, 지상49층 연면적 81천㎡
사업비	미정	3,226억원(민자)
특이사항	주민편익을 위한 임시주차장 활용 중(건립공사 착공 전까지 운영)	-

### ○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합계	구리랜드마크타워	구리아이타워
합계		12,227	6,751	5,476
1	연구용역비(타당성검토용역등)	161	97	64
2	지급수수료 (법률자문, 감정평가수수료)	501	366	135
3	조세(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0,853	6,281	4,572
4	기타비용(광고선전비/ PFV 출자금, 위원회심의수당)	712	7	705

○ 2025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단위 : 원)

연번	세목	금액	비고
	합 계	995,282,140	
1	재 산 세	240,449,770	
2	종 합 부 동 산 세	754,832,370	

- 2019년도와 2022년도에 걸쳐 이루어진 현물출자를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해당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장기간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자 재산은 활용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은 자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합니다. 특히, 사업 지연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경우에는 신속한 정상화를 통해 당초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사업 지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각 또는 대체 활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관리수익 및 입주자관리비용 재무제표 기재 (구리농수산물공사)

## □ 현황 및 문제점

○ 구리농수산물공사 입주자관리수익 및 입주자관리비용 내역

(단위 : 원)

구 분		합 계	2025년	2023년	2022년	2021년
(A) - (B)		(92,905,151)	(11,077,792)	(26,578,170)	(43,879,429)	(11,369,760)
관 리 수 익 (A)	소 계	37,848,763,102	10,205,394,286	9,993,244,712	8,896,577,068	8,753,547,036
	부과수익	37,824,431,992	10,181,063,176	9,993,244,712	8,896,577,068	8,753,547,036
	미부과수익	24,331,110	24,331,110			
관 리 비 용 (B)	소 계	37,941,668,253	10,216,472,078	10,019,822,882	8,940,456,497	8,764,916,796
	공공요금	22,150,241,505	6,318,036,747	6,063,889,537	5,024,352,292	4,743,962,929
	보험료	323,264,838	112,114,779	92,957,285	63,338,178	54,854,596
	수선유지비	15,468,161,910	3,786,320,552	3,862,976,060	3,852,766,027	3,966,099,271

○ 2025년 구리농수산물공사 임대시설 현황

(2025. 12. 31. 기준, 단위: m<sup>2</sup>)

구 분	합 계	시설사용면적	임대면적	비 고
전 체 면 적 (A + B)	153,857.36	120,786.94	33,070.42	
부과면적(A=a+b)	143,894.37	116,593.94	27,300.43	
임대면적(a)	142,956.49	116,593.94	26,362.55	관리비 부과대상
공사면적(b)	937.88	-	937.88	공사
미임대면적(B) 공실	9,962.99	4,193.00	5,769.99	

※ 시설사용면적: 중도매인 및 도매법인 부과 면적

※ 임대면적: 임대입주자 부과 면적

○ 구리농수산물공사에는 도매법인이 5개, 중도매법인이 504개 총 50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공사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입주업체에게 부과되는 관리비와 관리비용을 상계처리하여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고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입주자들이 매월 입주자관리수익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이 결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향후 소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공기업회계는 원칙적으로 총액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과 비용 또는 자산과 부채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총액으로 표시하는 회계처리 원칙을 말합니다. 특정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관련성이 있더라도 이를 상호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각각의 발생 금액을 총액으로 재무제표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입주자관리수익과 관리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호 상계하여 '0' 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차후에는 각각의 금액을 구분하여 재무제표 및 결산서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적으로 공실로 남아있는 면적(9,962.99㎡)에 대하여도 임대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내지 자체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자산(콘도회원권) 사용 방안 강구 (구리농수산물공사)

## □ 현황 및 문제점

- 2025년도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재무제표 상에 기타투자자산으로 콘도 회원권(29,668천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4년~2025년간 이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권 번호	평형/타입	이용자	투숙지역	이용일 (숙박수)	이용기간
소노호텔&리조트	스위트	○시○	소노벨천안WEST동	1	2024.11.01.~ 11.02.
한 화 리 조 트	스위트	○성○	산정호수	1	2024.03.16.~ 03.17.
	스위트	○수○	설악쏘라노	2	2024.08.15.~ 08.17.
	스위트	○수○	용인베잔송	1	2024.07.06.~ 07.07.
	스위트	○시○	양야브리드	2	2025.10.17.~ 10.19.

-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은 기타투자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2개년간 사용실적을 보면 2024년 4회, 2025년 1회, 총 5회 8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자산활용의 효율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해당 자산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자산 운용의 효율성 및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하여 보유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매각을 통한 자산 효율화나 직원복지 활용 확대방안으로써 구리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의 적절한 편성 및 관리 철저

(구리문화재단, 구리청소년재단, 구리상권활성화재단)

## □ 현황 및 문제점

- 구리문화재단 결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023년 31건, 2024년 52건에 이어 2025년에도 41건의 예산전용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3건) 등 전용이 제한되는 항목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구리시 청소년재단에서도 31건의 전용과 2건의 인건비 전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전용 사유는 세부사업 계획 변경,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목적, 변제공탁금 지급을 위한 변경 등으로 당초의 예산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타 용도로의 전용이 극히 제한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금, 조직진단 용역비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 구리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재단의 전체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8%를 상회하여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지조성사업비 항목은 추경으로 금액을 증액하였음에도 불용액이 증액 금액의 60%를 넘고, 상권분석 디지털화 사업은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의 전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의 적정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특히, 인건비성 경상경비는 가급적 재원간 전용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계획에 의거하여 집행이 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여 추경에 해당 내역을 반영하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기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여 타 사업에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이 예상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감액 편성을 통하여 예산이 다른 사업에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 (전 부서)

###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원)

구분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총계	468,172,759,710		400,775,342,198	56,100,140,322	11,297,277,190	
2025년 (전 회계 및 기금 포함)	계	427,462,472,900	387,276,391,838	30,123,652,782	10,062,428,280	
	국비	252,310,500,800	242,839,285,490	5,557,531,320	3,913,683,990	
	도비	69,453,700,100	54,689,576,853	12,564,378,857	2,199,744,390	
	시비	105,698,272,000	89,747,529,495	12,001,742,605	3,948,999,900	
이월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계	40,710,286,810	13,498,950,360	25,976,487,540	1,234,848,910	
	국비	6,553,277,720	5,535,743,150	304,909,180	712,625,390	
	도비	9,766,609,210	3,116,597,810	6,492,069,230	157,942,170	
	시비	24,390,399,880	4,846,609,400	19,179,509,130	364,281,350	

-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당해연도 및 이월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국·도·시비 포함 보조금 수령액이 468,172백만원에 집행액 400,775,백만원, 이월액 56,100백만원이며, 집행잔액 11,29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중 국·도비는 총사업비의 약 72%인 338,084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306,181백만원을 집행하고, 24,918백만원을 이월시켰으며, 6,983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2026년에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 조치하여야 합니다.

-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해당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지출잔액의 반납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나, 국·도비 미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이 50여 개 이상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 □ 개선 및 권고사항

- 구리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약 26%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확보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러나 성과를 위하여 받은 불필요하거나 시행이 어려운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경우, 업무의 효율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매칭된 시비의 불용으로 이어지면, 차년도 보조금 확보에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기에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보조금 사업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예산편성 후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예산에서 조정, 사업 변경 등 예산 운용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도 독려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세정과)

## □ 현 황

### 2026년 세무조사 실적 평가 결과(4그룹)

순위	시군명	상사업비	주요 우수내용
최우수	광주시	16백만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세무조사 절차 이행 등
우 수	구리시	13백만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전년대비 추징세액 증가율 등
	양주시	11백만원	세무조사 수행 비율, 도시 특수시책 추진 등

- 평가분야 : 세무조사 실적 평가
- 대상기간 : 2025.1.1. ~ 12.31.(2025회계연도)
- 평가방법 : 31개 시·군 그룹별(5개)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  
\* 고정지표 2개 + 가감산지표 1개

- 세무조사 실적 평가는 경기도가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세무조사 추징세액, 절차 이행도, 추징세액 증가율 등 3개 지표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리시는 2025회계연도 평가에서 해당 그룹 2위를 달성하며 기관 및 개인 표창과 함께 13백만원의 포상금을 확보 하였습니다.
- 이번 평가지표에서 구리시는 특히 추징세액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법인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전년 대비 606.97%라는 압도적인 증가율을 기록하며 1,803백만원을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 경기도 세원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도세 징수에 대한 징수 교부금을 확보함으로써 시 재정 확충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 특히 타 시·군과 비교하였을 때 별도 조사팀이 없는 어려운 조직 여건 속에서도, 기부채납용 토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4,898백만원을 추징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 세무조사 업무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 이와 함께 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병행 안내하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과 더불어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 총평 및 권고 사항

-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부동산 경기 위축,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세수 확보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 또한 누락세원 방지를 위해 특정 주체별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세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이므로, 이러한 전문적인 조사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앞으로도 지방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팀원 간 유기적인 업무 공유와 역할 분담을 통해 세무 행정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공정하고 안정감 있는 조세 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카카오 알림톡 바로납부 서비스 시행에 따른 징수율 제고 (징수과)

## □ 현 황

### ○ 카카오 알림톡 발송 및 징수실적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발송	2024년 징수액	2025년 징수액	증가액
합 계	47,320	6,157	6,769	612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42,535	3,608	3,832	224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4,785	2,549	2,937	388

### ○ 카카오 알림톡 발송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합 계	47,320	13,331	9,305	7,440	6,320	5,640	5,284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42,535	12,592	8,344	6,528	5,548	4,943	4,580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4,785	739	961	912	772	697	704

### ○ 체납고지서(전자고지 포함) 발송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절감액
합 계	88,459	54,313	34,320
지방세 체납	79,254	45,016	△34,238
세외수입 체납	9,205	9,297	92

- 기존 종이로 발송되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은 예산 부담 및 송달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종이 고지서 발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절감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25. 1월부터 카카오알림톡 기반 바로 납부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 종이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를 격월로 발송하여 고령층 및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카카오 알림톡 기능을 통한 고지 및 납부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실거주지가 불분명한 체납자 및 해외 체류자도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 메신저로 체납사실 통보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징수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는 납부시기를 놓친 소액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초 2만명이었던 과년도 체납자 수가 연말 8천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또한 고지서 송달률이 높아짐에 따라 징수액이 전년 대비 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 총평 및 권고 사항

- 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의 시행은 징수액 증가뿐만 아니라 종이 고지서 비율을 줄여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였으며, 고지서 제작비용 및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세출외현금 자금운용 방식 개선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 (회계과)

## □ 현 황

- 구리시 회계과에서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시 자체 수입 확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에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자금 관리 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중 4대보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이자수익이 낮은 보통예금(연 0.45%, 고정금리)에 예치되고 있어 사실상 유휴자금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 해당 보관금은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 보관 기간이 약 20일에서 90일 정도로 짧은 단기성 자금이나, 단기간이라도 운용 가능하다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이를 고금리 상품으로 운용할 경우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기존의 단순 보관 방식에서 벗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MMDA(수시입출금계좌, 1.97%)를 활용한 효율적인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수입증대 내역

(단위 : 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965,330	1,030,440	1,250,370	1,436,420	3,643,190	3,515,180	4,993,610	16,834,540

## □ 총평 및 권고사항

-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MMDA)를 통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의 자금 운용 방식으로의 변화는 기존의 수동적인 자금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업무 프로세스 개선만으로 가시적인 세입 증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 단기 유희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주기적인 금리 모니터링을 통한 최적의 자금 운용으로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 해결   □ 추진중   □ 불가   □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6. 30.	
제목	명시이월 사업비 예산 운용 철저		
소관부서(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 행 2052	
<b>【 지적사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3년 명시이월 사업비의(8건/7,279백만원) 2024년 집행률은 26.2%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li><li>○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발주 시기, 사업기간, 관련법 검토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월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세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li><li>○ 간주예산 편성 시에는 당해연도 포함 3년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길 바람.</li></ul>			
<b>【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예산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사업 추진계획,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관련 법령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등 이월액 감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음.</li><li>○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시기와 예산 규모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확보 후에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겠음.</li><li>○ 또한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수년도에 걸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li></ul>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2	2026. 3. 31. 현재			
완료 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11. 30.			
제목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관련 자구 노력 철저				
소관부서(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 행 2752		

## 【 지적사항 】

- 2024년 지방교부세는 2023년도 대비 24.5%(200억 이상) 감소됨.
- 세출효율화(수요) 부분의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 세입확충(수입) 부분의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서 페널티를 받았음. 해당 항목의 경우 시의 노력으로 세입을 증대할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자구 노력을 하기 바람.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 추진현황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 미흡 이하 등급 43개 사업 10% 이상 삭감(71백만원) 또는 폐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보고회 : 2025. 9.
- 체납징수 우수 시·군(하남시, 파주시) 벤치마킹 : 2025. 11.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보정수입액) 신규지표 발굴 및 행안부 건의
  - \* 건의내용 : 신규 보정수요 지표(광역철도 운영) 도입

### ○ 향후 추진계획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 강화
- 지방보조금 한도액 내 합리적인 편성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사업 필요성·효과성 등 사전검토 철저
- 타시·군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활용한 사해행위 추적 등
- 기타 : 기준인건비 준수 노력, 신규 행사성사업 심사 강화 등

### ※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재정부족액 ≒ 보통교부세액

① 기준재정수요액 = 기초수요액 + 보정수요액 ± 수요 자체노력 반영\*

②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액 + 보정수입액 ± 수입 자체노력 반영\*\*

\* 수요 자체노력 : 인건비 건전운영,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예산집행노력(불용률, 이월률),

현금성복지 경비 지출운영

\*\* 수입 자체노력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적극적 세원 관리, 지방세감면액 축소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3-1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6. 30.	
제목	회계별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개선 필요		
소관부서(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 행 2752	

## 【 지적사항 】 \*기획예산담당관(기금 총괄)

- 기금 및 특별회계는 해당 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비 편성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사업 편성을 통해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재정 효율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는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은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식예금(MMDA)을 활용하여 예금이자수익을 증대하는 등 운용 방식의 개선을 통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 추진현황

- 구리시 기금은 10개로 모두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 2024년 사업비 편성비율이 0%였던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25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
  - \* 향후 사업 추진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추진 예정
- 사업비 편성비율이 낮은 기금\*은 조례 개정, 신규사업 발굴 유도를 통해 편성비율 증대 추진
  - \* 국가유공자단체등지원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 현재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는 모든 기금의 자금은 시금고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 증대(\* 불임참조)

### ○ 향후계획

- 효율적인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방안 마련 및 추진
- 불필요한 기금 및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는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등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3-2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9. 30.			
제목	회계별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개선 필요				
소관부서(팀)	회계과 (경리팀)	☎ 행 2171			

## 【 지적사항 】

-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는 공금예금 외 정기예금을 통한 자금의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얻고 있으나, 기타특별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 등 6개)는 공금예금만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이자 수입을 얻고 있음.
-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는 특별회계 재원은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식예금(MMDA)을 활용하여 예금이자 수익을 증대하는 등 운용 방식의 개선을 통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6개의 기타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 통합자금 운용방식을 준용하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기타특별회계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 완료.
- 기타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 방침을 수립하여 9월부터 시행.
  - MMDA 이자 발생금액('25. 9월 ~ '26. 3월) : 46,738,080원
  - (※ 26.3월 기준 이자율 : 공금예금 0.6% / MMDA 1.01% )
- 매월 기타특별회계 지출규모 및 자금소요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식예금(MMDA)에 예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최대한의 이자수익을 창출하여 시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음.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4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11. 14.	
제목	성과보고서 지표 개선 권고		
소관부서(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 행 2838	
<p><b>【 지적사항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보고서 작성 시 미달성한 지표 및 초과 달성한 지표의 경우, 보다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li> <li>○ 총괄 부서가 지표의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의 가이드 라인을 사전에 안내하여 각 부서가 근거에 따라 지표를 개선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li> </ul>			
<p><b>【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추진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목표의 달성 및 성과지표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장 책임하에 국별 성과계획서 수립</li> <li>- 2026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li> <li>- 계획서의 작성방향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산식·목표치 개선 검토</li> </ul> </li> <li>○ <b>향후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도 예산 의결 후 의회 의견 또는 자체 점검 후 가이드라인 추가 보완</li> </ul> </li> </ul>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5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6. 30.	
제목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적기 편성 개선 필요		
소관부서(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 행 2052	

## 【 지적사항 】

- 2024년 일반회계 예비비 중 91.9%를 차지하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차 추경에 편성되어 실제 재해·재난 대응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 4차 추경에 편성하는 재정운용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 추진현황

- 2025년 4회(마무리) 추경까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미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규정 준수

####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비비(예비비 편성한도는 없음)

※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지양 및 회계운용 상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

### ○ 향후계획

- 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필요한 예비비적 성격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에 편성 후 활용
- 원칙적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미편성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6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6. 3. 31.
제목	지방재정시스템과 공유재산 대장 필지 수 차이 해소	
소관부서(팀)	회계과 (재산관리팀)	☎ 행 2190

## 【 지적사항 】

- 2024년도 말 기준 재무회계 결산 자료상의 필지 수와 공유재산 대장(서울시스템)상의 필지 수가 상이함.
- 상이한 원인은 토지의 분할 취득 및 합병말소 등 변동이력 미반영, 공기업 특별회계(상·하수도 특별회계)의 필지사항 미반영, 24년 취득내역 중 25년도 입력사항 미반영, 발견된 누락재산 차후 입력 미반영 등임.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 추진현황

#### 1. 공기업(상·하수도) 특별회계 사항 미반영 건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으로 관리하는 일반회계와는 다르게,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재정관리 시스템(로바스, Lobas)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므로 서울행정시스템에는 등재되지 않음.

※ 미반영 사항 (공기업 특별회계)

구분	토지(필지)	건물(동)	차량(대)
수량	67	41	16

#### 2. 서울행정시스템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간 매각·취득사항 미반영 건

- 서울행정시스템에서 행정처분(매각·분할·말소) 후 미반영 재산은 재무결산 시 회계사와 처분재산 현황 대조 후 처분사항 반영

구분	토지(필지)	건물(동)	차량(대)
수량	90	4	5

### ○ 추진결과

- 재무결산 시 행정처분 불부합 사항 정비완료 하였고, 지속적으로 불부합사항 등을 관리하여 재무결산 - 서울행정시스템 대장 간 일치할 수 있도록 관리 추진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7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향후 추진	
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 임대재산 매입 검토		
소관부서(팀)	회계과 (재산관리팀)	☎ 행 2721	
<p><b>【 지적사항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과 내 부지인 토평동 1-1, 2-1번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하여 사용중</li> <li>○ 현 부지는 1992년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진행에 따라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매수 추진 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토지보상비가 이전된 자료만 존재하고, 일반회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입비용으로 지출된 자료 부재</li> <li>○ 해당 재산은 구리시에서 장기적 사용예정이므로, 회계과(일반회계)에서 매입하여 하수과(특별회계)로 재산관리관 이전하여 대부료 절감 및 효율적 관리 추진</li> </ul>			
<p><b>【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매입 검토(토평동 1-1, 2-1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재산은 구리시에서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으로서, 매입 시 약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토평동 1-1(264㎡, 탁상감정가 369,600,000원), 2-1(93㎡, 탁상감정가 130,200,000원)]</li> <li>- 현재 두 필지의 합산 연간 사용료는 2026년 기준 5,229천원 가량으로, 연단위 사용료 기준 약 95년 이상의 매입비용이 소요되어, 연단위 납부 형식의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예산팀과 협의하여 예산 확보 시, 매입방안 보고 및 일반회계에서 매입하여 특별회계(하수과)로 재산관리관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li> </ul> </li> </ul>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8-1	2026. 3. 31. 현재			
완료 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4. 10. 10.			
제목	지방보조금 미집행 예산 관련 개선 필요				
소관부서(팀)	홍보협력담당관 (민간협력팀)		☎ 행 2141		

## 【 지적사항 】

- 지방보조금 지급예산이 설정되었으나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미사용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 등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비정기적인 사업이나 행사의 경우 예산을 예비적인 차원에서 설정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산 결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 예산검토시에 해당 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보조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 조치결과(추진현황)

- 「새마을 Clean 실개천 만들기 사업」 → 2024년도 사업 미진행으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제외.(2024. 10. 10.)
- 「민주평통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청소년 안보 현장 교육) 사업」 → 2024년도 보조금 미사용 비율이 79.27%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보조금을 11,002천원에서 5,324천원으로 삭감하여 사업 축소함.(2024. 10. 10.)
-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강화 교육 사업」 → 2024년도 보조금 미사용 비율이 76.85%이나, 1박2일 예정이었던 사업이 현지 사정으로 당일 행사로 축소 진행되어 보조금 잔액 발생함. 향후에도 미사용 비율 높을 경우 예산 삭감 예정.

###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부하고, 보조금 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정산 결과 사업 집행률이 낮거나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예산 삭감 또는 사업 폐지 검토.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8-2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 해결   □ 추진중   □ 불가   □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7.	
제목	지방보조금 미집행 예산 관련 개선 필요		
소관부서(팀)	총무과 (총무팀)	☎ 행 2341	
<b>【 지적사항 】</b>  ○ 지역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 순찰 사업 지방보조금 미집행			
<b>【 보조금 미집행 사유 】</b>  ○ 지역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 순찰 사업을 진행 예정이었으나 구리경찰서의 지침 변경에 따라 보조사업자(구리경찰서 시민경찰봉사회)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 이에 따라 2024년 6월 4일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가 확정됨.			
<b>【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b>  ○ 2025년 해당사업 보조금 미편성  ○ 추후 시민경찰봉사회 보조사업자 확정 시 보조금 예산편성 예정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8	2026. 3. 31. 현재			
완료 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10. 31.			
제목	지방보조금 미집행 예산 관련 개선 필요				
소관부서(팀)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 ☎ 2321				

## 【 지적사항 】

### ○ 지방보조금 정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금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미사용 비율(%)
산업지원과	일반학생승마체험(자체사업)	33,600,000	16,072,000	-	17,528,000	52.17

- 2024년 "일반학생승마체험(자체사업)" 지방보조금 정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미사용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사후관리의 필요성 있음
- 보조금 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예산안을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매년 유사하게 예산을 설정하는 것을 지양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 2024년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	미사용 비율(%)
국비	학생승마체험	150	37,440	37,440	0	0
시비	일반학생승마체험(자체사업)	165	33,600	16,072	17,528	52.17

- 민선8기 공약사업(승마체험, 관광활성화 지원)으로 승마체험 지원 확대를 위해 학생승마 체험 국비 지원 부족분(165명)을 자체 시비로 지원 예산 편성 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주말로 선호 시간 물림으로 인해 중도 포기자 발생
- 2025년 추진현황
  - 2025. 4.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체험자 모집(330명)
  - 2025. 5. : 체험자 모집 및 선정(1차/ 86명)
  - 2025. 7. : 체험자 모집 및 선정(2차/ 106명)
  - 2025. 8. : 참여 승마장 추가 모집(하남미사리승마공원, 의정부 서울승마클럽)
    - 학생 및 학부모가 선호하는 주말 강습 수요 충족을 위함
  - 2025. 9. : 체험자 모집 및 선정(3차/ 42명)
- 향후계획
  - 승마 체험 중도 포기자 발생시 예비 순위자를 활용한 대체 참여를 즉각 추진하여 사업 공백을 방지하고 보조금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강화 예정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8-4

2026. 3. 31. 현재

완료 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10. 31.
제목	지방보조금 미집행 예산 관련 개선 필요	
소관부서(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행 2969	

## 【 지적사항 】

- 지방보조금 정산현황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금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미사용 비율(%)
노인장애인복지과	독거노인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운영지원	21,984,000	6,123,430	-	15,860,570	72.15

- 보조금 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예산안을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매년 유사하게 예산을 설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임.
- 특히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비정기적인 사업이나 행사의 경우 예산을 예비적인 차원에서 설정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정산 결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 예산 검토 시에 해당 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보조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향후 구리시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기에 지적한 사항 등을 반영한 평가 체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2025년 상반기 정산을 통해 미집행 예산액 점검 후 3회 추경 감액
  - 2025. 7. 21. 상반기 보조금 미집행액 잔액(9,633천원) 반납 처리 완료
- 수행기관 실무협의회(25.09.26.)를 통해 3년간 사업 누적 달성률(44.93%) 및 수요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목표 건수(150건) 재설정 완료
- 3년간 누적 미집행 반납액(76.75%)를 반영한 2025년 하반기· 2026년 보조금 편성
  - 2025년 상반기 미집행 반납액 3회 추경 감액 (21,984천원 →12,351천원) 완료
  - 2026년 본예산 편성 (21,984천원→10,000천원)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8-5	2026. 3. 31. 현재			
완료 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7. 5.			
제목	지방보조금 미집행 예산 관련 개선 필요				
소관부서(팀)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체육진흥팀) ☎ 행 2115, 2144				

## 【 지적사항 】

- 2024년 지방보조금 사업 중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미사용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 등 사후관리가 필요.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예산안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매년 유사하게 예산을 설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
-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인 경우 예비적인 차원에서 설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정산 결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 예산 검토 시 해당 사업제외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 수립 시 개선이 필요함.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명예경찰소년단 출범식 및 리더십 함양 견학, 청소년소리단 운영, 제2회 구리시민 건강걷기 대회
  - 보조사업자 예산안 검토 강화
  -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접수 시 사업 추진 가능성, 유사내용의 예산 반복적 설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요구
  -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 지방보조금 사업의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본예산 편성, 미집행 사업이나 집행률 저조 사업인 경우 재검토를 통해 예산 삭감 등 보조금 미집행 방지
- 차기 예산 편성 시 개선 방안
  - 비정기적 행사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개최 여부 결정 후 예산 편성 추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 시기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 요구
-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
  - 지방보조금 사업의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연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삭감 등), 정산자료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업의 반복적 미집행 방지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9-1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 해결   □ 추진중   □ 불가   □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8. 21.	
제목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신속 정비 및 체납징수 방안 강구		
소관부서(팀)	세정과 (시세팀)	☎ 행 2203	
<b>【 지적사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4년 담배소비세 체납액은 558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2% 차지하고 있는 바 체납징수율 증대에 영향을 미침.</li><li>○ 합성니코틴 등 신종담배에 대한 관리 체계 미흡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바 상급기관에 신속한 지방세 법령 개정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li></ul>			
<b>【 조치결과 】</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 명 : 담배소비세 관계법 개정 건의서 진달 요청</li><li>○ 요청일자 : 2025. 8. 21.</li><li>○ 제출기관 : 경기도(세정과-11874호)</li><li>○ 주요내용 : 담배소비세 관계법 미비에 따라 지자체 세수관리에 어려움 있음.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신종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도 마련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 건의</li></ul>			
※ 2025.9.25. 국회 기획재정위「담배사업법」개정안* 의결			
* 담배의 정의 확대안(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9-2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 해결 □ 추진중 □ 불가 □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7. 8.	
제목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신속 정비 및 체납징수 방안 강구		
소관부서(팀)	징수과 (지방세체납팀)	☎ 행 8815	

## 【 지적사항 】

- 2024년도 담배소비세 체납액은 588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바, 미수납액 징수 여부가 체납징수율에 영향을 미침.
- 담배소비세 미수납액에 대해 다양한 체납처분기법을 활용하여 시세입을 확보함과 동시에 체납징수율을 향상시킬 방안 마련.

## 【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조치결과

- 담배소비세 미수납액 정리내역 ('24.12.31.현재)

(단위: 백만원)

징수결정액	정리보류	미수납액	비고
589	280	309	2024회계연도 기준

- 압류실익없는 체납에 대하여 정리보류하였고, 정기적인 재산조회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 향후 추진계획 및 징수현황

- 현재 소송계류 중으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체납 처분 여부 결정.
- 담배소비세 체납법인 중 주식회사 ○○코리아(180111-0908301)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분납중이며 총 115,181,210원(2025.12.31.기준)을 징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0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type="checkbox"/> 해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6. . . (완료예정일 : 2026. 12. 31.)
제목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 철저	
소관부서(팀)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행 8963

## 【 지적사항 】

- 생활안정자금은 대출 대상자가 기본재산이 부족한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려를 통해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망자 및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적극적인 행정으로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 조치결과

기준일: '26.03.31.

(단위: 천원)

과목	계	사망	기타(무재산 등)	비고
계	390,335	35,190	355,145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264,901	32,452	232,449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125,434	2,738	122,696	

### ○ 향후 추진계획

- 분할 납부 추진
- 고지서 발송 및 정기적인 납부 독려(전화 및 문자발송)
- 체납자에 대한 방문상담을 통해 체납액 상환을 추진
- 장기 체납자 중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재산확인 및 결손처분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1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6. 30.	
제목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규모점포 (주)엘마트 대부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		
소관부서(팀)	도시개발과 (도매시장개발팀)	☎ 행 2776	
<p><b>【 지적사항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3월 29일 개정된「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보증금 내역에 대부료, 관리비, 변상금 등을 포함하여 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확보하여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li> <li>○ (주)엘마트와 체결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와 같이 계약 해지 통보일을 6개월 전으로 설정할 경우, 점포명도 기한까지 체납분이 증가하므로 향후 대부계약 시 점포명도 기한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하여 추가적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li> <li>○ 유통종합시장 운영에 실제 사용된 전기료, 수도료, 용역비 등 관리비는 공유재산의 운영 특성상, 시에서 선납 뒤 사후 관리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인 체납의 경우 이를 차감하거나 징수할 방법이 없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단전, 단수에 관한 특약을 설정하여 체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 철저</li> </ul>			
<p><b>【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b></p> <p><b>1.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임대) 점포 계약자 계약 체결 시 보증금 현금 납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점포 : 롯데마트 구리점 보증금 납부 3,146,000천원(2025.07.07.) (주)아성다이소 271,168천원(2025.07.07. 납부)</li> <li>○ 소규모점포 : 무지개연합회의원 등 19개 점포 317,010천원(2024.08.~2025.11.)</li> <li>○ 축산가공동 : 청우유통 등 14개점포 2026년 대부계약 갱신시 보증금 납부 예정</li> </ul> <p><b>2.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임대) 점포 계약 체결시 자진명도 기간 축소(6개월→3개월 이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시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 자진명도 기한 지정하여 통보(3개월 이내 추진 예정)</li> <li>○ 대부(임대) 계약자가 해지를 요청할 경우 : 자진명도 기한 1개월 전 서면 통보</li> </ul>			

### 3.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임대) 계약자가 관리비를 3개월이상 체납할 경우 전기사용 중지 조항 계약서 반영

-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전기사용 중지 조항 신설

#### 특약사항

본 특약사항은 대부자(이하 '구리시'라 한다)와 대부받은 자(이하 '계약자'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대부계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① 대부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 기타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당월분 사용료(난방비, 급탕비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전기료 및 수도료를 포함한다)등 (이하 "관리비 등 제납부금"이라 한다)을 납부기한까지 구리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비 등 제납부금은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와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월의 대부료 등 제납부금은 일 단위로 산정한다.

④ 입주 당월의 관리비 등 제납부금은 입주일로부터 가산한다. 다만,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 관리비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산정한다.

⑤ 관리비, 난방비,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대부면적(난방비의 경우 대부면적에 따라 산정함이 부적합할 시는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하고, 개인이 사용한 급탕비,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은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⑥ '계약자'는 대부료 등 제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구리시'는 '계약자'가 상기 제2항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전기사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납부한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한다.

⑧ 상기 제1항 내지 제7항 및 본 대부 계약 제6조에 따른 관리비 등은 '롯데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2-1	2026. 3. 31. 현재	
완료 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6. 3.	
제목	관리대행 재계약 협약 시 대행 수수료 등 재검토		
소관부서(팀)	회계과 (재산관리팀)	☎ 행 2190	

## 【 지적사항 】

- 구리도시공사와 재계약 협약 시 대행수수료를 전년도 집행실적의 5%, 간접비는 8.1%의 비용을 사업 특성의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 있음. 이에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던 현행에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요율을 재조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 추진현황

- 도시개발과(주관부서)의 대행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대행사업 위탁부서 의견요청에 따른 회계과 의견제시

**(대행수수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3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 수수료에 관한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각 사업별 대행수수료를 재산정 검토 요청

**(경영지원부 간접비)** 현 구리도시공사의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경영지원부 간접비에 대한 수수료 지급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요청

### ○ 향후계획

- 각 부서별 대행사업 현황(난이도 및 업무량 등) 및 타시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개발과 주관 대행사업비 수수료율 산정 검토 시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의 적정 대행사업 수수료율을 위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음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2-2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6. 30.		
제목	관리대행 재계약 협약 시 대행수수료 등 재검토			
소관부서(팀)	자동차관리과(차량등록팀,주차관리팀) ☎ 행 2576			

## 【 지적사항 】

- 구리시는 구리도시공사와의 관리대행 협약에서 대행수수료 5%, 대행간접비 8.1%를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일률적 요율 적용이 별도 검토 없이 반복되고 있음.

<2024년도분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수입, 대행수수료 및 간접비 지출내역>

(단위: 원)

구분	대행사업비집행실적 (A)	2025년(2024년분) 대행수수료(A*5%)	2025년(2024년분) 간접비 (A*8.1%)	수입
공영주차장	2,270,233,309	113,511,660	183,888,890	2,336,892,720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567,606,288	78,380,310	126,976,100	63,060,720

- 관리대행 수수료와 간접비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향후 관리대행 재계약시 관행적인 요율 적용을 지양하고 각 사업의 특성과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대행수수료 및 간접비 지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길 바람.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공영주차장은 공공의 복리, 편리 등을 위해 관리 경영하는 주차장으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며, 인건비 등 전반적인 물가는 상승하였으나 주차장의 주요 수입원인 주차요금은 1999년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수지율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간위탁 사업자의 경쟁력이 없음.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과 사회보장 수혜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수익 창출이 제한적이며 이용료 수입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구조임. 이러한 사업 특성상 민간위탁 방식보다는 공공기관을 통한 관리대행 방식이 안정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공영주차장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수수료 및 경영지원부 간접비 지급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근거하여 구리도시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51-관리대행사업비 객관적 산정기준 마련)에 따라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한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적용하고 있음.

\*관련문서 도시개발과-6130(2021. 11. 24.)

- 향후 재협약시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고 구리도시공사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의 협의 및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간접비 및 대행수수료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2-3	2026. 3. 31. 현재			
완료 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11. 17.			
제목	관리대행 재계약 협약 시 대행수수료 등 재검토				
소관부서(팀)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		☎ 행 8797		
<p><b>【 지적사항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계약 협약 시 소요 예산에 대행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한 대행수수료(집행액의 5%)와 간접비(집행액의 8.1%) 비용을 별도 검토 없이 같은 요율을 계속 적용</li> <li>○ 관리대행 재계약 시 관리대행 수수료와 간접비 지급 요율을 관행적으로 적용 지양</li> <li>○ 적정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li> </ul>					
<p><b>【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공영주차장은 2024년 신규로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시설에 편입되었으며 협약 체결 시 적용한 대행수수료 5%는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사업 표준협약」에서 정한 전년도 대행사업비 집행실적의 5% 기준을 신규 시설에도 동일 적용한 것임.              ※ 표준협약 검토보고에서는 '구리도시공사 대행수수료율 적절성 연구(지방공기업학회)'를 인용하여 5% 수수료율이 장기적으로 적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어 최초 적용의 타당성이 확인됨.</li> <li>○ 구리도시공사 경영지원부 간접비 8.1%는 2020년 「구리시 시설물 관리대행 변경동의안」에서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관리대행 시설에 대해 구리시 의회가 공식 승인한 요율로, 대행사업 원가 대비 8.1%를 간접비 보전비율로 설정한 것임.              ※ 해당 동의안에는 변경사유로 '2019년도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 실행방안 이행'이 명시되어 있어 간접비 반영의 제도적 근거가 존재함.</li> <li>○ 지적사항에 따라 제2공영주차장의 요율 적용 경위와 적정성을 재검토한 결과, 대행수수료 5%는 표준협약 기준(지방공기업학회 적절성 연구)와 부합하고, 간접비 8.1%는 의회 승인 요율로 신규 시설에 적용한 것이며, 별도의 차등 산정 또는 조정 요구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b>현행 요율 유지(5%+8.1%)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치 완료함.</b></li> <li>○ 향후 재계약 시에는 제2공영주차장 관리대행의 실제 운영규모, 대행사업 원가, 업무범위 변화 등을 중심으로 현행 요율(5%, 8.1%)의 적용 타당성을 다시 한번 종합 검토하겠음.</li> <li>○ 시설운영 여건 변화가 확인될 경우 요율 재산정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음.</li> </ul>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2-4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11. 24.	
제목	관리대행 재계약 협약 시 대행수수료 등 재검토		
소관부서(팀)	평생학습과 (체육진흥팀)	☎ 행 8775	

## 【 지적사항 】

- 구리도시공사와 재계약 협약 시 소요 예산에 대행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한 대행수수료(집행액의 5%)와 간접비(집행액의 8.1%)비용을 별도 검토 없이 같은 요율을 계속 적용하는 관행을 지양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대행비 지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현행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대행 사업의 수수료율(5%)은 2021년 구리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개선사항(51-관리대행사업비 객관적 산정기준 마련)에 따라 도시개발과에서 시행된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적용하였음.  
[관련문서 도시개발과-6130(2021. 11. 24.)]
- 대행수수료 및 간접비 산정방식 개선
  - 유사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여 대행비 산정 기준 재정립 검토
  - 향후 관리대행 재협약시 사업별 난이도, 업무량, 인력소요 등을 구리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적정 지급 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2-5	2026. 3. 31. 현재	
완료 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11. 30.	
제목	관리대행 재계약 협약 시 대행수수료 등 재검토		
소관부서(팀)	문화예술과 (관광팀)	☎ 행 8355	

## 【 지적사항 】

- 구리시에서 구리도시공사와 재계약 협약 시 별도 검토 없이 대행사업비 집행 실적에 대한 대행수수료(집행액의 5%)와 간접비(집행액의 8.1%) 비용을 같은 비율로 계속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 관리대행 재계약 시 관리대행 수수료와 간접비 지급 비율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정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 추진상황

- 2017.08.11. : 구리토평가족캠핑장 최초 관리대행 협약 (대행수수료 : 5%)
- 2020.06.02. : 시의회 '시설물 관리대행 변경 동의안' 의결
- 2020.06.24. : 토평가족캠핑장 관리대행 재협약 (대행수수료 5%, 간접비 8.1%)
- 2021.11.24. : 도시개발과 '관리대행사업 대행비와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  
 ※ 현행 대행수수료(5%), 간접비(8.1%) 구성 타당
- 2023.06.19. : 토평가족캠핑장 관리대행 재협약 (상동 / 대행기간 ~2026.6.30.)

### ○ 추진계획

- 구리토평가족캠핑장의 대행수수료 등 비율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한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기초하여 통일성 있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 2026.상반기 관리대행 재협약 시 종전 대행수수료 등 비율을 현행대로 적용할 계획임.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2-6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7. 5.	
제목	관리대행 재계약 협약 시 대행 수수료 등 재검토		
소관부서(팀)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	☎ 행 2759	

## 【 지적사항 】

- 구리도시공사와 재계약 협약 시 소요 예산에 대행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한 대행수수료(집행액의 5%)와 간접비(집행액의 8.1%)비용을 별도 검토 없이 같은 요율을 계속 적용하는 관행을 지양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대행비 지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현행 구리시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대행 사업의 수수료율(5%)은 2021년 구리시의 회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51-관리대행사업비 객관적 산정기준 마련)에 따라 도시개발과에서 시행된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서 도시개발과-6130(2021. 11. 24.)]
- 대행수수료 및 간접비 산정방식 개선
  - 유사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여 대행비 산정 기준 재정립 검토('25. 하반기)
  - 향후 관리대행 재협약(2027. 10월경) 시 사업별 난이도, 업무량, 인력소요 등을 구리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적정 지급 요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2-7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7. 3.	
제목	관리대행 재계약 협약 시 대행수수료 등 재검토		
소관부서(팀)	공원녹지과 (수변공원팀)	☎ 행 2472	

## 【 지적사항 】

- 현재 공공체육시설인 왕숙천 체육공원, 시립테니스장, 시민운동장, 구리시 야구장 4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대행에서 위탁으로 전환하였고, 2023년 별내선 운영관리비를 협의 대행수수료 5%만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관리대행 재계약 시 관리대행 수수료와 간접비 지급요율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정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의 특성에 따라 대행비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 【 조치결과 】

- 현행 구리한강시민공원 관리대행 사업의 수수료율(5%)은 2021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51-관리대행사업비 객관적 산정기준 마련)에 따라 도시개발과에서 시행된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있음.  
[관련문서 도시개발과-6130(2021. 11. 24.)]
- 향후 관리대행 재계약 협약 시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관행적인 요율 적용을 지양하고, 사업의 특성과 내용, 타 지자체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대행비 (수수료 등) 요율을 적용할 계획임.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3-1	2026. 3. 31. 현재			
완료 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12. 23.			
제목	구리도시공사 위·수탁 및 관리대행 시 수탁재산 관리 철저				
소관부서(팀)	회계과 (재산관리팀)	☎ 행 2173			

## 【 지적사항 】

- 구리도시공사에서 위·수탁 및 관리대행하는 사업 관련 수탁재산의 새울 물품관리 시스템 물품등록 누락
  -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 18건(94,000천원)
  - 검배 체육문화센터 : 7건(31,203천원)
  - 공영주차장 : 17건(88,347천원)
  - 별내선 복선전철 : 65건(304,726천원)
  - 교통약자이동센터 : 5건(44,602천원)
  - 구리시 체육관 : 12건(52,207천원)
  -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 15건(29,003천원)
  - 토평가족캠핑장 1건(8,600천원)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취득물품 등록 계획 수립 : 2025. 8.(회계과-24256)
  - ※ 재물조사 기간(2025. 6. ~ 10.) 중 물품 출납 자제
- 구리도시공사 취득물품(2021년~2025년) 내역 파악 : 2025. 11.(회계과-35527)
- 새울 물품관리시스템 일괄 등록 요청 : 2025. 12.(회계과-37528)
  - \* 회계과 등 6개 부서, 559개 물품
  - \*\* 균형개발과 537개 물품 등록완료(2025. 7.)
- 태그발행 및 부서 배부 : 2025. 12.(회계과-41489)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3-2	2026. 3. 31. 현재	
완료 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11. 25.	
제목	구리도시공사 위·수탁 및 관리대행 시 수탁재산 관리 철저		
소관부서(팀)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주차관리팀) ☎ 행 2576		

## 【 지적사항 】

- 관리대행 및 위·수탁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협약 시 재산목록 인계인수서 및 물품관리대장을 명기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해야함.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위탁협약서에 재산 관련 인계인수서가 누락되고 있어 수탁자산의 현황 파악과 소유주체로서의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 관련 부서는 수탁 재산에 대해 시 소유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인계인수서 작성 및 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매년 공영주차장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대행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 감사를 통해 물품관리대장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취득한 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누락된 수탁자산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자산에 등재(시스템 등록) 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회계과-35527(2025. 11. 17.)호와 관련하여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취득물품을 전수조사하여 취득물품 목록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관련문서 자동차관리과-93556(2025. 11. 25.)]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3-3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12. 18.		
제목	구리도시공사 위·수탁 및 관리대행 시 수탁재산 관리 철저			
소관부서(팀)	균형개발과 (특별사업팀)		☎ 행 2794	
<p><b>【 지적사항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8호선 연장 역무운영관리 위탁사업관련 수탁재산 대장 등 인수인계서 누락 및 새올시스템 재산 등록 누락</li> <li>- 8호선 연장 역무운영관리 수탁재산내역 : 65건 304,726천원</li> </ul>				
<p><b>【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 7. : 수탁재산 새올시스템 입력 계획 수립</li> <li>○ 2025. 8. : 수탁재산 새올시스템 입력</li> <li>○ 2025. 12. 18. : 8호선 연장 역무관리운영 위수탁 재협약 체결시 수탁재산 인수인계서 작성 완료</li> </ul>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3-4	2026. 3. 31. 현재			
완료 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11. 17.			
제 목	구리도시공사 위·수탁 및 관리대행 시 수탁재산 관리 철저				
소관부서(팀)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		☎ 행 8797		
<p><b>【 지적사항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 대행부서에서 협약서에 재산목록 대장과 물품관리대장 등 인수인계서 누락</li> <li>○ 2024년 새로 취득한 물품(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15건 29,003천원)이 시 재산에서 누락</li> <li>○ 도시공사에 수탁 중인 재산에 대하여 시 소유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등 정비 필요</li> </ul>					
<p><b>【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도시공사 제2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서 제2조(관리대행 재산의 표시)에 따라 관리대행 재산 세부 목록에 대한 인계·인수서 작성 의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도시공사가 '24~'25년 취득한 물품구매 26건(70,880천원) 목록화 완료</li> <li>- 목록 자료를 토대로 인계·인수서(구리도시공사 → 구리시) 작성 완료</li> </ul> </li> <li>○ 구리도시공사 수탁자산 취득물품 26건에 대한 등록 누락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과에 관리대행 취득물품 목록 제출 완료(일자리경제과-45382,2025.11.21.호)</li> <li>- 회계과에서 새올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완료</li> </ul> </li> <li>○ 향후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취득물품에 대하여도 협약서 기준에 따라 인계·인수 절차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리도시공사 수탁자산 취득 시 인계·인수서를 즉시 작성하고 분기별 취득 내역을 시에 제출, 새올물품관리시스템 등록을 실시하여 재산 등재 누락 방지</li> </ul> </li> </ul>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3-5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11. 24.			
제목	구리도시공사 위·수탁 및 관리대행 시 수탁재산 관리 철저				
소관부서(팀)	평생학습과 (체육진흥팀)		☎ 행 8775		

## 【 지적사항 】

- 재산목록 인계인수서와 물품관리대장을 명기하여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시스템 등록 등 물품 및 공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길 바람.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구리도시공사와 물품관리대장이 포함된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관리대행 지도감독 등을 통해 수기 물품관리대장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해 오고 있음.
- 인계인수서가 누락되었거나 수탁재산현황이 불명확한 건에 대해서는 구리도시공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재산목록을 확인하여 실제 보유현황과 일치 여부를 점검하겠음.
- 향후, 총괄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하여 필요시, 시스템 등록을 통해 좀더 철저하게 물품 등을 관리하도록 하겠음.
- 회계과-35527(2025. 11. 17.)호와 관련하여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취득물품을 전수조사하여 누락된 취득물품 목록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관련문서 평생학습과-23846(2025. 11. 20.)]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3-6	2026. 3. 31. 현재			
완료 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12.			
제목	구리도시공사 위·수탁 및 관리대행 시 수탁재산 관리 철저				
소관부서(팀)	문화예술과 (관광팀)	☎ 행 8355			

## 【 지적사항 】

- 도시공사에 수탁 중인 재산에 대하여 시 소유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며, 수탁재산의 시스템 등록 등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 그간 추진상황

- 2025.11.17. : 회계과 → 문화예술과 / 관리대행 취득물품 목록 제출 요청
- 2025.11.21. : 문화예술과 관리대행 취득물품 목록 제출
- ※ 2021년 이후 수탁자산취득비 구입 대상 16건 (새울 미등록분)

### ○ 추진계획

- 2025.12월중 : 새울 물품보유현황 현행화 완료(회계과 일괄등록)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4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type="checkbox"/> 해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6. . . (완료예정일 : . . .)			
제목	채권(미수수익) 회수 권고				
소관부서(팀)	구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건설사업팀) ☎ 031)550-3737				

## 【 지적사항 】

- 미수수익의 상세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이타워부지 매도와 관련하여 매수자측에서 중도금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확인함.
- 과거년도부터 지속적인 미수수익의 증가로 미수수익의 자산성에 의구심이 발생.
- 과거년도부터 발생한 미수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미수수익을 조속히 회수할 방안 마련 및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 추진현황

- 2022. 5.10. : 토지매매계약 체결 (公社↔PFV)
- 2022. 8. 9. : 토지중도금 납부기한 연장 요청의 건 (PFV→公社)
- 2022.11.15. : 토지중도금 납부기한 연장 요청의 건(2차) (PFV→公社)  
※요청기간 : 건축허가 완료시까지
- 2022.11.18. : 토지중도금 납부기한 연장 요청(2차)에 대한 회신 (公社→PFV)  
※주요내용 : 납부시기 연장 동의 및 연장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 2025.11.18. : 개발사업 관련 조사결과 알림 (市 감사담당관→公社)
- 2025.12.17. : 조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公社→市 감사담당관)
- 2026. 2.11. : 재심의 결과 통보 (市 감사담당관→公社)

### ○ 추진계획

- 2026. 상반기 : 확인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민간사업자 협의 등 진행

### ○ 중도금 지연사유 및 미수수익 회수방안

- 인허가 기간 고려 토지중도금 납부가 건축허가 완료시까지 지연된 상황임.
- 토지매매계약서에 의거 납부가 지연된 중도금은 연6.5%(월 1.3억원)의 지연손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며, 향후 PFV로부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회수할 예정임.
- 公社는 市 감사부서로부터 자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확인된 문제점 해결 및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의견회신 등 여러 노력을 진행중임.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관리번호	15	2026. 3. 31. 현재	
완료여부	완결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결	<input type="checkbox"/>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완료일시	완료일 : 2025. 9. 30.	
제목	예산의 적정한 설정 권고		
소관부서(팀)	구리문화재단 (경영지원팀)	☎ 031-580-7921	

## 【 지적사항 】

- 예산의 적정한 설정 권고(예산전용 과다)
  -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함.
  - 예산의 성립 후에는 예산 전용 및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함.

## 【 조치결과(추진현황) 또는 향후 추진계획 】

- 예산 전용 관련 지침 알림(경영지원팀-2790, 2025. 6. 12.)
  - 예산집행 원칙 및 예외
    -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해야 함. 물가 인상, 사업환경 변화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 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별 예산 과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전용 방지 등
  - 예산전용의 기본원칙, 제한사항, 유의사항
    - 사업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승인을 통해 전용 가능함.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특정 과목 전용 불가,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 불가 강조함.
- 예산편성 기간 도래 시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2025. 9월)

[첨부] 예산전용 집행 관련 유의사항 알림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구 리 문 화 재 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예산전용 집행 관련 유의사항 알림

---

1. 관련근거

- 가.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 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다.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 라.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예산·회계 규정

2. 예산 전용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용 및 집행하여 주시고,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집행 원칙 및 예외(예산전용 사유)

1) 원칙

- 가)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

2) 예외(예산전용)

- 가) 예산전용은 예산편성 시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유(예: 물가 인상, 프로그램 변경, 사업환경 변화 등)로 인해 특정 항목의 예산이 부족해졌거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발생한 경우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

나. 예산전용의 기본원칙

- 1) 사업목적 부합: 원래의 사업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2) 투명성 및 책임성: 예산 전용 사유, 금액, 내역 등이 명확해야 함
- 3) 사전승인
  - 가) 예산의 항 간 전용: 예산업무 주관팀 협의, 이사회 승인
  - 나) 예산의 세항 간 전용: 예산업무 주관팀 협의, 이사장 승인
  - 다) 예산 목 간 전용: 예산업무 주관팀 협의, 대표이사 승인

다. 예산전용 제한

1) 특정 과목 전용 불가

- 가)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 불가
- 나) 업무추진비에 총당하기 위한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 불가

2)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 금지: 한 번 전용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 불가

라. 예산전용 관련 기타 유의사항

- 1)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 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별 예산 과목 적용에 면밀한 검토
- 2) 보조금 사업예산 확정에 따른 추경 후, 세부사업의 부기별 예산배분 확정 시, 예산전용이 아닌 추경으로 예산 재반영. 끝.

##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이사장

수신자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문화진흥팀장

---

차장	오정훈	차장	최원준	대표이사	진화자
협조자					
시행	경영지원팀-2790 (2025.6.12.)			접수	
우					/ <a href="https://www.guriart.or.kr">https://www.guriart.or.kr</a>
전화	전송		/ ohasa2002@guriart.or.kr		/ 공개



